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나696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론

담당변호사 윤태원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4. 21.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가단52460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2017. 12. 31.자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2017. 12. 31.자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D은 2017. 12.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은 임의경매절차에서 E 소유의 기계장치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위 기계장치를 매수한 후 위 기계장치 중 수평강화로 및 유리절단기를 다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매도한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M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이후 D은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와 D 사이의 위 주식증여계약 또는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F 설립 당시 인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전부 납입하고 F 주식 30,000주를 인수하였는데, 그중 10,000주인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이자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당초부터 피고의 소유로서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반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반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2, 14 내지 16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9. 1.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여 오다가 2017. 1.

1. 폐업한 사실, ② E 소유의 토지 및 공장, 기계장치 등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K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12. 16. 그 중 기계장치가 L에게 매각되었는데, L는 2015. 1. 28. J에게 위 기계장치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였고, J는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L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 28. 7,000만 원, 2015. 2. 5. 7,000만 원, 2015. 3. 6. 1억 3,500만 원 합계 2억 7,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J는 2015. 1. 15. M에게 위 기계장치 중 수평강화로 및 유리절단기를 매매대금 합계 3억 2,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였고, M로부터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 28. 2억 원, 2015. 2. 17. 1억 원, 2015. 2. 26. 3,200만 원, 2015. 3. 11. 1,000만 원, 2015. 3. 12. 2,000만 원, 2015. 3. 14. 520만 원 합계 3억 6,72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④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N증권 계좌로 2014. 12. 23. 800만 원, 2015. 2. 17. 1억 5,000만 원, 2015. 2. 23. 5,000만 원, 2015. 3. 13. 2,500만 원 합계 2억 3,3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⑤ D 명의로 배정된 F 주식의 인수대금은 2015. 6. 15. 피고 명의의 N증권 계좌에서 1억 4,900만 원,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이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지급한 사실, ⑥ 한편, F의 발행 주식 중 10,000주가 D에게, 20,000주가 피고에게 각 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로부터 수평강화로 및 유리절단기를 매수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M에게 이를 매도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J로서,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F 주식 총 30,000주를 취득하였으나 그중 10,000주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배우자인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호, 판사 송인경, 판사 김진만

별지

목 록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F
2. 주주명 : D
3. 1주의 금액 : 5,000원
4. 소유주식의 수 : 10,000주
5.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끝.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법률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하나의 청구로서 다만 그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